

의안번호	제 102 호
의 결 연 월 일	2007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07년 4월 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필

# 충청북도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2
----------	-----

제출연월일 : 2007년 4월 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1. 개정이유

- 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에 대한 수당지급 기준이 국가직 및 타 시·도의 기준보다 낮아 시험업무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현실화 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현행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운영해 오던 시험수당 지급기준을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이 시행하는 시험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별지 1>
- 나.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를 제2조제2항으로 함.(안 제2조)

3. 의안전문 : 불 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불 임

5. 관계법령 발췌 : 불 임

## 충청북도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조를 삭제하며, 제5조를 제4조로 한다.

제2조(수당)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문제의 출제·선정·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자
2. 면접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자
3. 시험관리에 종사하는 자

②도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수당) 수당은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p>	<p>제2조(수당)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문제의 출제 · 선정 · 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자</li> <li>2. 면접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자</li> <li>3. 시험관리에 종사하는 자</li> </ol> <p>②도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p>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 별표 중 도지사 산하 공무원이 객관식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p>	<p>제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5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삭제)</p>

## 관계법령 발취

### □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6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시험위원 등)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에 관한 출제·채점·면접시험·실기시험·서류전형 기타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당해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자
2. 시험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3. 임용예정직무에 대한 실무에 정통한 자

⑤시험위원·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위원·시험관리관·채점요원 및 시험 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별지 1”

시험수당 지급기준 변경내역

수 당 별	구 분		현 행 수 당 액	중앙인사위원회 기준액		
출제수당	객관식	6급 이하 시험(문제당)	10,000원	5지선다형	30,000원	
				4지선다형	25,000원	
	주관식	6급 이하 시험(1과목 위원당)	45,000원	대문제(문제당)	40,000원	
				소문제(문제당)	30,000원	
채점수당	객관식	6급 이하 시험(응시자1인1과목)	22원	문제당	2원	
	주관식	10부까지 기본료	30,000원	5부 이내(기본)	100,000원	
		1부 초과 부당	800원	1부 추가	1,500원	
면 접 및 실기시험수당	5급이상 (일당)	10명까지 기본료 10명 초과 1인당	40,000원 1,000원 *상한 50,000원	재직자	반일	150,000원
					전일	200,000원
				외부인	반일	200,000원
					전일	300,000원
	6급이하 (일당)	10명까지 기본료 10명 초과 1인당	20,000원 500원 *상한 50,000원	재직자	반일	100,000원
					전일	150,000원
				외부인	반일	100,000원
					전일	200,000원
종사원 (일당)	1인당	10,000원	평 일	재직자	40,000원	
				민간인	50,000원	
문제편집수당	일 당(8근무시간)		10,000원	평 일	40,000원	
				휴 일	70,000원	
				비합숙	20,000원	
문제선정 심의수당	과 목 당		45,000원	1 인당	200,000원	
감시수당	공 휴 일(전일)		50,000원	70,000원		
	공 휴 일(오전)		40,000원	50,000원		
	평 일		20,000원	40,000원		

**[제2조의 별표] <개정 2001. 11. 16, 2005. 3. 18>****시 험 수 당 지 급 기 준 표**

수 당 별	구 분		수 당 액	비 고
출제수당	객 관 식	6급 이하 시험(문제당)	10,000원	
	주 관 식	6급 이하 시험(1과목 위원당)	45,000원	
채점수당	객 관 식	6급 이하 시험(응시자1인1과목)	22원	
	주 관 식	10부까지 기본료	30,000원	
		1부 초과 부당	800원	
면 접 및 실기시험 수 당	5급이상(일당)	10명까지 기본료	40,000원	※상한 50,000원
		10명 초과 1인당	1,000원	
	6급이하(일당)	10명까지 기본료	20,000원	※상한 50,000원
		10명 초과 1인당	500원	
	종 사 원(일당)	1인당	10,000원	
문제편집 수 당	일 당		10,000원	
문제선정 심의수당	과 목 당		45,000원	
감시수당	공 휴 일(전일)		50,000원	
	공 휴 일(오전)		40,000원	
	평 일		20,000원	

※ 위 표는 시험수당지급 기준의 상한선을 정한 것으로 시험의 규모·성질 등을 고려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예산과 지급기준의 범위 내에서 집행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연금작업시의 하루는 8근무시간을 1일로 환산하여 3일로 간주할 수 있다.

“참고자료”

2007년도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지급 기준표

(단위 : 원)

구 분		단 위		지급 단가	
문제 출제	객관식(5지형)		문제당	30,000	
	객관식(4지형)			25,000	
	주관식(대문제)			40,000	
	주관식(소문제)			30,000	
	기본교재비	일반	문제당	5,000	
		PSAT	문제당	10,000	
	면접문제	5급공채	문제당	100,000	
		이 외	문제당	70,000	
	PSAT		회의 참석	전 일	100,000
				반 일	50,000
			문제당	외 부 전문가	기본급
채택급					30,000
재직자				기본급	40,000
				채택급	20,000
문제 심사 선정	객관식(5급 공채)		1인당	200,000	
	객관식(5급 승진, 7·9급)			200,000	
	주관식 (5급)	1일		200,000	
		1박2일		300,000	
	사전심사			200,000	
	문제유형개발회의			200,000	
	PSAT 문제검토	1인당		교 수	200,000
재직자			70,000		
정 답 확 정		1일	150,000		
문제 재검	교 수		1일	200,000	
	교 사			150,000	
	기 타			70,000	

(단위 : 원)

구 분			단 위		지 급 단 가
출 제 및 편 집	합 숙	평 일	1 일		<b>40,000</b>
		휴 일			70,000
	비 합 숙		1 일		20,000
기 타	타자·의료간호		1 일		50,000
채 점	객 관 식		문제 당		2
	주관식(기본)		5부 이내		100,000
	주관식 (추가)	1부 추가	1·2문 분리	11부 이상	1,500
			1·2문 미분리	11부 이상	2,000
시 험 관 리	휴일(전일)	재직자· 민간인	1인 당		70,000
	휴일(반일)				<b>50,000</b>
	평 일	재직자			<b>40,000</b>
		민간인			50,000
면 접	5급 이상(공채, 제한경쟁, 특채)		재 직 자	반 일	150,000
				전 일	200,000
			외부 전문가	반 일	200,000
				전 일	300,000
	5급 이상 (특채)		반 일	재직자	50,000
				외부 전문가	100,000
			전 일	재직자	100,000
				외부 전문가	200,000
	6급 이하(공채, 제한경쟁, 특채)		재 직 자	반 일	<b>100,000</b>
				전 일	<b>150,000</b>
			외부 전문가	반 일	100,000
				전 일	200,000
회화력 평 가	기본료(10인까지)		1 인당		200,000
	추가(1인당)				5,000

### 일용인부임 등 지급기준표

(단위 : 원)

구 분		단 위	지급기준	비 고
본 부 관리관	본 부	1실~10실	9명 이내	
		11실~20실	13명 이내	
		21실 이상	22명	
	지 방	1개교 당	22명	
시험실 관리관	공 통	1명~35명	2명	
		36명~70명	3명	
		71명~100명	4명	
		101명 이상	5명	
시험장 인부임	공 통	1명~60명	22,000	
		61명~100명	45,000	
		101명 이상	<b>60,000</b>	
시험장 임차료	공 통	1명~60명 (냉·난방)	<b>10,000</b> (13,000)	면접시험장 임차료 별도
		61명~100명 (냉·난방)	20,000 (26,000)	
		101명 이상 (냉·난방)	30,000 (39,000)	
시 험 관 련 인부임	공 통	원서정리 및 채점지원	<b>33,500</b>	정부노임단가 인상분 반영
		인터넷 원서접수 (12시간 근무)	50,000	
시험장 관 리 운영비	서 울	1개교 당	50,000	
	지 방	1개교 당	<b>80,000</b>	